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10
----------	-------

발의연월일 : 2026. 7. 2 .

발 의 자 : 한정애 · 조인철 · 박민규
정준호 · 송재봉 · 이재정
박지혜 · 홍기원 · 윤후덕
정진욱 · 박용갑 · 허 영
고민정 · 유동수 · 박홍배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는 타인의 형사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친족 특례를 적용해 처벌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최근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가 구속 수사를 받는 사이, 그의 성범죄 목적을 뒷받침할 핵심 증거를 현직 경찰관인 아버지가 훼손·폐기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지만 부친은 형법상 친족 간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을 모면함.

이뿐만 아니라 30대 A 씨가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자신의 생부이자 폭력조직 부두목인 조규석 씨가 강도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임을 알고도 도피 생활을 도왔지만 형법상 범인도피죄의 친족 특례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음.

이처럼 형법상 증거인멸죄, 범인은닉죄 등에 행위자와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은 처벌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가 존재해 사건의 핵심 증거가 인멸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형법상 친족특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수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가해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 151조 등).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1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5조제4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① (생 략)</p> <p>②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前項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p>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생 략)</p> <p>④ <u>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本人을 爲하여 本條의 罪를 犯한 때에는 處罰하지 아니한다.</u></p>	<p>第151條(犯人隱匿과 親族間의 特例)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 <p>第155條(證據湮滅等과 親族間의 特例) ① ~ ③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삭 제></u></p>